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1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조례의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등 10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1. 12. 31.에서 2026. 12. 31.로 5년 연장하고자 함
-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다. 조례 본문과 별표의 기금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근거법령 정비, 기금명칭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근거법령란 개정규정은 각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지방자치법 근거법령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법령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임의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3	체육진흥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4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법정
5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2026.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임의
6	노인복지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7	양성평등기금	2026.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8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9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0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2	도로굴착복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3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법정
14	한옥보전지원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5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6	사회투자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7	아동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8	장애인체육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1	(현행과 같음)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3	체육진흥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3	체육진흥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4	재난관리 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4	(현행과 같음)		
5	자활기금	2021.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5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 기금	2026.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
6	노인복지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6	노인복지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7	양성평등기금	2021.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7	양성평등기금	2026.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8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8	(현행과 같음)		
9	중소기업육성 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9	중소기업육성 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0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10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2	도로굴착복구 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12	도로굴착복구 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3	옥외광고물정 비기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13	(현행과 같음)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4	한옥보전지원 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15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16	사회투자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17	아동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18	장애인체육기 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4	한옥보전지원 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5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6	사회투자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7	아동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8	장애인체육기 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표에 기금존속기한과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고 영 룡